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6

발의연월일: 2020. 7. 20.

발 의 자:김정호·정성호·임종성

김경협 · 신현영 · 김병욱

박재호 · 서동용 · 전재수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현행법의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신기술 등장에 따른 화상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에 표시되는 화상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부재해 신산 업 창출기회의 상실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성이 없는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 글자체 및 물품의 액정화면에 표시된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물품등"이라 한다"로한다.

제34조제3호 및 제4호 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물품 및"을 각각 "물품 등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물품으로"를 "물품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물품에"를 "물품등에"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제109조 본문 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제114조 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4호 중 "물품 및"을 "물품등 및"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한다.

제175조제2항제6호 중 "물품 및"을 "물품등 및"으로 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한다.
제196조제1항 중 "물품 및"을 "물품등 및"으로 한다.
제214조 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한다.
제215조제1호 및 제3호 중 "물품"을 각각 "물품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 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1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u>및</u>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글자체 및 물품의 액정화면에
<u>다</u>]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표시된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	<u> "물품등"이라 한다</u>
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	
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는 디자인)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	
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u>물품</u>	3 <u>물품</u>
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	<u></u>
는 디자인	
4. <u>물품</u> 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4. <u>물품등</u>
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 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u>물품</u>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 4. ~ 9.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 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u>물품</u>
 및 물품류
- 2. · 3. (생략)
- ③ (생 략)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출원할 수 있다.
- ⑤ (생략)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 지연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

1.•2. (현행과 같음)
3물품
등 및
4. ~ 9. (현행과 같음)
②
<u>.</u>
1물품
등 및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물품등으로</u>
<u> </u>
<u> </u>
<u>.</u>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 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 ---물품등에-----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① -----물품등-----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 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물품등-----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 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 │ ② -----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생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 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불품능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

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
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
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
야 한다.

-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 구권 등) ①·② (생 략)
 -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 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다.
-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u>물품등</u>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
구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등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u>물품등</u> 물품등
<u>물품등</u>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 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 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 3. (생략)
-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u>물품</u>

 및 물품류
- 5. ~ 7. (생략)
- ② (생 략)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u>물품</u>에는 미치지 아니한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
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u>.</u>
1. ~ 3. (현행과 같음)
4 <u></u> 물품
<u>등 및</u>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①
<u>물품등</u>

다.

- 1. ~ 3. (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u>물품</u>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u>물품</u>을 해 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 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 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 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생략)
 -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u>물품</u>및 물품류
 - 7. · 8.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7 ·② (생 략)
 -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

1. ~ 3.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물품등
<u>물품등</u>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현
행과 같음)
②
<u>.</u>
1. ~ 5. (현행과 같음)
6 <u>물품</u>
등 및
 7. ·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 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 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 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 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 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 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 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 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 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 로 본다.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 저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물품
<u> </u>
<u>물품등,</u> -
물품등,-
<u>물품등,</u> -
 1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
 1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 례) ①
 1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 례) ①
 II 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 례) ①
 1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 례) ①
 II 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 례) ①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 무국에 내야 한다.

② · ③ (생 략)

-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 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 를 할 수 있다.
-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 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2. (생략)
 -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u>물</u> 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 닌 <u>물품</u>을 생산·사용·양도 또 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 판 또는 표찰에 그 <u>물품</u>이 디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u>물품등물품등</u>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1 <u>물</u>	-
<u> 품등</u> 물품등	
O (원레기 가야)	
2. (현행과 같음) 3 <u>물</u> 품등	_
<u> </u>	
물품등	